

『청년희망키움통장』 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청년희망키움통장』 (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 관련 법령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자산형성의 대상 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운영 지침』(이하 "운영 지침"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운영 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 관리기관에서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 (이하 "손님"이라 함) 및 중앙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손님은 1인 1계좌 가능합니다)

제 3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상호부금으로 합니다.

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손님은 60개월, 중앙자활센터 72개월로 합니다.

제 5 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손님은 0원이상 50만원이내에서 원단위로 신규하고, 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제 6 조 적립방법

손님은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하며, 중앙자활센터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적립 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분할해지

손님이 가입한 예금은 계약기간 중 최종 해지분을 포함하여 5회 범위내에서 입금 건별 균등계산방식에 따라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분할해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기간별 중도 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분할해지 시에는 최소 1원의 잔액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 8 조 이자지급

- ① 이 예금의 만기해지 시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썸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 ② 이 예금의 중도해지 시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

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 ③ 손님이 만기일 이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은행은 만기일부터 만기 후 1개월까지는 지급일 당시 고시된 3년제 상호부금 약정금리의 1/2 금리를,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지급일 현재 고시된 3년제 상호부금 약정금리의 1/4을 적용하여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제 9 조의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9 조 우대금리

- ① 이 예금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은 손님이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최대 연 0.8%의 우대금리를 가입일 당시 고시한 기본 금리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가.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손님이 지정한 날에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 (연 0.5%)
 - 나.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로 하나카드 (체크, 신용)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1%)
 - 다.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거래를 한 경우(연0.1%)
 - 라. 매월 5만원 이상 18개월 납입한 경우 (연0.1%)
- ② 제1항의 우대금리는 손님명의 계좌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중앙자활센터 명의의 계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우대금리는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시에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해지방법

- ① 손님은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중앙자활센터가 “운영지침”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부지원금은 중앙자활센터에서 해지 요청시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해지합니다.

제 11 조 특별중도해지

“운영지침”에 따라 만기 전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은행에 **특별중도해지승인** 통보한 경우 **이 예금의 약정금리**를 적용합니다.

제 12 조 양도의 제한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제 13 조 부가서비스

손님이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5만원 이상 금액을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제한없이 면제합니

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수수료를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 1)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 이체거래
- 2)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제 14 조 기타

정부지원금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지침”이 적용됩니다.

부 칙(1)

본 약관은 2019년 06월 17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가입자는 기존 약관을 적용받습니다.